

#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

편집부

농림부는 지난달 1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,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“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”을 고시했다(농림부고시 제 2004-9호). 다음은 이중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점검요령을 발췌, 정리한 것이다.

##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점검요령(제5조제1항관련)

### 1. 소독점검대상 및 점검요령

점검대상	점검기준	점검주체	점검요령	
가축사육시설	소	시장, 군수	점검대상 사육시설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연간 1회 이상 점검	
	돼지			사육규모 50두 이상 사육규모 1,000두 이상
	닭			사육규모 20,000수 이상
도축장	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	시장, 군수	분기별 1회 이상 전 도축장 점검	
집유장	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집유장	시장, 군수	분기별 1회 이상 전 집유장 점검	
사료공장	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체	시장, 군수	분기별 1회 이상 전 사료공장 점검	
가축시장	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	시장, 군	분기별 1회 이상 전 가축시장 점검	
가축검정기관	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검정기관	종축 검정기관	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	
종축장	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종축장	시장, 군수	분기별 1회 이상 전 종축장 점검	
부화장	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	시장, 군수	분기별 1회 이상 전 부화장 점검	
축분비료공장	비료관리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부산물비료 생산시설	시장, 군수	분기별 1회 이상 전 축분비료공장 점검	
가축·원유·동물약품·사료·분뇨 운반차량	도축장·집유장·사료공장·축분비료공장 등이 운영하는 해당 목적의 차량	시장, 군수	도축장·집유장·사료공장·축분비료공장 등 점검시 해당 시설별 관련차량 점검	

(비 고) 상기 점검대상 이외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·차량에 대하여는 시장·군수가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점검 실시

## 2. 소독설비대상별 소독실시기준

소독설비대상	설치 기준		소독실시기준
	공통기준	개별기준	
가축사육시설 (300㎡이상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차량·사람 출입구 소독조</li> <li>-1000㎡이상 가축사육시설은 사람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 분무기</li> <li>○관리사무실·사료창고·축사출입구 소독조</li> </ul>	주1회 이상 시설·장소 소독 (300㎡ 미만 가축사육시설 포함) 계류장·작업실등 도축작업과 직접 연관되는 장소는 매일 청소·소독 실시
도축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가축·식육 운반차량 세척·소독시설</li> <li>○소독약 보관용기·연결파이프의 동파방지 장치(전기열선장치)</li> <li>○외부인 출입구 소독조</li> <li>○가금류 수송용기 세척·소독시설(가금류도 축장에 한함)</li> </ul>	주1회 이상 시설·장소 소독
집유장	○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원유수송차량 세척·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(2대 이상)</li> <li>○외부인 출입구 소독조</li> </ul>	주1회 이상 시설·장소 소독
사료공장	- 300~1000㎡ 가축사육시설은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사료수송차량 세척·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(2대 이상)</li> <li>○외부인 출입구 소독조</li> </ul>	주1회 이상 시설·장소 소독
가축시장	로 대체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출입자 소독조</li> <li>○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</li> </ul>	가축집합 전·후 시설 소독
가축검정기관	○소독약 보관용기,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출입자 소독조</li> <li>○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</li> </ul>	가축집합 전·후 시설 소독
종축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차량·사람 출입구 소독조</li> <li>○출입자 옷 세척·소독을 위한 탈의실·샤워장·소독실</li> <li>○관리사무실·사료창고·축사출입구 소독조</li> <li>○시설소독을 위한 고압분무기(2대 이상)</li> </ul>	주1회 이상 시설·장소 소독
부화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출입자 소독조</li> <li>○부화용 알 및 난자 소독시설</li> <li>○부화실·병아리방 출입구 소독조</li> <li>○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</li> </ul>	알 부화 전·후 소독
축분비료공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가축분뇨·축분비료 수송차량 세척·소독 시설 혹은 고압분무기(2대 이상)</li> <li>○출입자 소독조</li> </ul>	주1회 이상 시설·장소 소독
가축·원유·동물약품·사료·분뇨 운반차량			가축사육시설 등 출입차량 소독

(비고) 소독실시 공통기준: 소독설비대상별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, 각 시설은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 실시